감염병 관리 규정

제정 2020, 03.30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대학에 재직하는 교직원, 등록된 재학생 및 기타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감염병이란 사람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(바이러스, 세균, 곰팡이 등)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(독소)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.
- 2. 감염병 (의심)환자란 의료기관의 진료결과 감염병 확진을 받았거나 의사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하다.
- 3. 유행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감염병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.
- 4. 방역물품이란 감염병 (의심)환자 발생 시 발열 감시, 전파 차단 조치, 격리 및 평상시 손씻기 실천, 학교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, 물품을 의미한다.

제2장 감염병 관리위원회

- 제4조(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)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 위원회(이하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 제5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교무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총장이 맡는다.
-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 담당 부서에서 맡는다.
- 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이 유고시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본다.
- **제8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감염병 관리규정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
- 3. 감염병 위기대응계획의 검토
- 4.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3장 감염병 관리조직

- 제10조(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) ① 감염병 관리위원장은 대학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염병 관리조직은 감염병 총괄관리자, 실무지휘자, 예방관리팀, 학사관리팀,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한다.
- ③ 실무지휘자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보고 및 신고, 위기 상황 진단 및 정책을 판단하며, 후속 대책을 세운다.
- ④ 예방관리팀은 평상시의 예방 활동과 감염병 발생 시의 대응업무를 담당하며, 학생담당부서팀장, 각스쿨(기숙사) 감염병 관리자, 보건 담당자, 대학보건실 직원으로 구성한다.
- ⑤ 학사관리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학사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며, 교무담당부서팀장, 스쿨 교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.
- ⑥ 행정지원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며, 교육지원담당부서 관리센터 장 및 팀원, 총무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.
- 제11조(감염병 총괄관리자)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를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.
- ②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총장으로 한다.
- ③ 감염병 총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대학 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 담당: 사고지휘관 역할
- 2.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
- 3. 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 및 관리
- **제12조(감염병 실무지휘자)**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지휘자를 지정한다.
- ② 감염병 실무지휘자는 감염병 총괄관리자가 임명한다.
- ③ 감염병 실무지휘자는 대학교 전체 또는 해당 캠퍼스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휘 감독하며, 감염병 발생 정보를 취합하여 감염병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.
- 제13조(감염병관리자) ① 대학 내 각 스쿨 별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및 관리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자를 지정한다.

- ② 감염병 관리자는 감염병 총괄관리자가 지정한다.
- ③ 감염병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담당 기구 내 감염병 발생 감시
- 2. 감염병 발생 정보의 취합 및 보고
- 3. 구성원들에게 감염병 관련 정보의 제공
- 4. 감염병 (의심) 환자 관리
- 5.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
- 6.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

제14조(대학보건실) 대학보건실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.

- 1. 감염병 발생 감시
- 2. 교직원용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
- 3. 감염병 관련 상담
- 4. 감염병(의심) 환자 관리
- 5.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

제4장 감염병 관리 및 조치사항

제15조(감염병 관리) ①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한다.

제16조(방역) ①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.

② 감염병 (의심) 환자 발생 또는 유행 시 임시 소독을 실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